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관련 가이드라인

(관계기관 합동 TF)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비영리법인의 기부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목적 거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은행과 거래소의 역할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2. “실명계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말한다.
3. “은행”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명계정을 개시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4. “거래소”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하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용계좌”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공익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말한다.

제3조(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 기준) ①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또는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인일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상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은 불임의 ‘가상자산 기부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 기부 접수 및 현금화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은행 및 거래소 역할)** ① 은행 및 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명계정 연결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실명계정 연결을 최초로 심사하는 경우
  - 가. 비영리법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비영리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명계정 연결을 재심사하는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 나.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자금이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로 출금되었는지 여부

③ 거래소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가 거래소를 통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 기부의 상세내역과 현금화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한 기준 등에 따라 매도시기·물량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④ 은행 및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명계정 연결의 거절,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가상자산 기부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안) 1부

(붙임)

## 가상자산 기부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

### 제1장 가상자산 기부 접수 및 심의

제1조(기부 접수) ①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기부 접수 시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 신청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2. 기부목적 및 사용처
  3. 기부대상 가상자산의 종류(3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수량 및 출처
  4. 기부자와 가상자산 발행 주체 간의 관계
  5. 기부자와 비영리법인(임직원 포함) 간의 관계(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상자산 기부 수령은 금지)
  6. 기부자가 기부 시 이용할 거래소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부자 안내사항
    - 가. 가상자산 기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 나. 가상자산 기부는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 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현금화 이후에는 기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8. 기타 기부 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비영리법인은 기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기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2조(기부 심의) ① 비영리법인은 제1조에 따라 접수된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심의·검토하기 위한 사전심의 기구(예: 가상자산 기부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심의기구에는 가상자산,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부 승인) ① 비영리법인은 제2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부 승인한 경우, 제1조에 따라 접수한 내용으로 기부자와 기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장 가상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

제4조(계좌 개설 및 실명계정 연결) 비영리법인은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로 지정하고, 실명계정 연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 수령) ① 비영리법인은 기부자와 체결한 기부 약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명의의 거래소 가상자산주소(지갑)로 가상자산 기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기부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비영리법인은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을 수령한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금화)** ① 비영리법인은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기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거래소를 통해 지체없이 현금화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에 따른 심의를 통해 별도의 현금화 시기를 정한 경우
2.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한 기준 등에 따라 매도시기·물량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출금)** 비영리법인이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없이 은행에 사전 지정한 비영리법인 명의의 공익 목적사업용 전용계좌로 출금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 및 회계처리)**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가상자산 거래 시 준수사항

**제10조(거래 목적 제한)**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 목적으로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거래 투명성 확보)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 방지)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기부자 간에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의 수령 거절 등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관리 및 점검

제13조(관리 및 점검) ① 비영리법인은 제5조에 따른 기부 수령, 제7조에 따른 현금화, 제8조에 따른 출금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제2조에 따른 기부 심의, 제5조에 따른 기부 수령, 제7조에 따른 현금화 절차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세무 및 회계 처리(안)

### 1.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세무처리

#### 가.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1)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기부자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나) 기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 가상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예: 기부 당시 거래소 내 거래가격)으로 한다.

3)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나. 세법상 취득가액의 산정

1) 비영리법인은 수령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취득 당시의 시가

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 당시 장부가액

(2) 기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부 당시 장부가액. 다만, 사

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3)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취득가액.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2)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2.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 가. 최초 인식 및 측정

- 1)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 2) 최초 인식 시에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소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 나. 후속 측정 및 처분

- 1) 비영리법인이 매 보고기간 말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2)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다. 주식 공시 등

- 1)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 중 “Ⅱ. 가상자산 보유자 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한다.
- 2) 별표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

관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작성원칙을 이 처리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공시한다.